

# “소재 파악도 못해서야...신고제부터 시행하자”

## 홈스쿨링의 명암

홈스쿨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홈스쿨링을 빙자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에서 홈스쿨링이 소개된 지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수요가 있는 만큼 적어도 학부모의 신고 의무를 부여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만큼은 교육 당국이 파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우리나라에 홈스쿨링을 소개한 대안교육 전문 계간지 '민들레'의 현병호 발행인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홈스쿨링을 빙자해 아이들을 학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전혀 사회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지 파악조차 안되는 상황”이라며 “최근 아이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여러 사정으로 홈스쿨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례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홈스쿨링은 우리 의무교육 체제에서는 합법이 아니지만 그 실태를 교육 당국이 정확히 파악하지는 않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장기 미인정 결석자 중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고 밝힌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취학대상 아동이 7일 이상 장기 미인정 결석을 한 경우 학교에서 집중관리대상자로 정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하지만, 학부모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했다는 민원과 소송 부담이 큰 상황이다.

홈스쿨링의 경우에도 관계법령이 마련돼 제도화에 들어간 대안교육기관의 사례도 참고해 볼 만 하다.

2020년 국회를 통과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월부터 시행,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대안학교 등 교육시설을 교육 당국이 등록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의 경우 공립학교에 다니지 않아도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고, 인적사항을 학교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 대안교육기관, 지난해부터 법령 마련돼 제도화 美 조지아주, 부모가 교육 당국에 ‘홈스쿨 신고’ “학교 안 나와도 ‘교육 받는다’ 확실하면 인정”

홈스쿨링은 어떤 장소에서 수업을 받지 않고 학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온전히 책임지는 개념이라 이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곤란한 상황이다.

오해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설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지원센터 '꿈지락' 센터장은 “홈스쿨링도 지방자치단체나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같이 제도권과 연계된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 단계는 홈스쿨링 허용 요건을 굉장히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해의 유학에 필요한 서류, 관계기관의 보증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허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용역을 받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19년 내놓은 ‘홈스쿨링 제도화 및 지원 방안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다르지만 홈스쿨링을 하기 위해 학부모의 책임을 엄격하게 마련한다.

미국 조지아(Georgia)주에서는 학부모나 보호자가 매년 학교 책임자에게 홈스쿨을 하고 있는 자녀 등 학생의 이름과 나이, 주소, 수업 날짜 등을 담은 신고서를 학기 시작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홈 스터디 프로그램에 읽기, 수학, 사회, 과학 과목을 포함하고, 학부모가 직접 자녀를 가르치려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의 조건도 갖추고 있다.

해당 보고서의 연구책임자인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대안교육학과 석좌교수는 “미국에서도 부모에게 자각까지 요구하는 등 꽤 강한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고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어디서도 놓치지 않는 것은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결과가 어떠한 지 교육청에 신고하고 나중에 결



지난 10일 오후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과를 확인 받는 절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고제가 필요하다”며 “어디든 아이를 보내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해 모든 학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당국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만 6세부터 중학교까지는 교육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 체계상 홈스쿨링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제도화가 곧 우리 교육 당국이 공교육 테두리 밖의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다.

이 석좌교수는 “미국도 의무교육이지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교육’과 ‘취학’의 차이”라며 “우리나라도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교육을 하는 것만 확실하면 의무교육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대안교육의 개념을 넓혀 홈스쿨링을 여기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뉴시스

## “학폭 시달린 아이, 밝아져”...美 SAT 성적 우수

### 초2때 학폭으로 우울증 시달리다 자퇴한 사연

### “학교 안 가니 좋아...친구들이 안 괴롭히니까”

### 공황장애로 자퇴후 ‘영재발굴단’ 출연 초등생도

홈스쿨링은 아이의 특성에 따라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되기도 한다. 해외뿐 아니라 홈스쿨링이 제도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도 성과를 거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2018년 7월 발간된 '민들레' 118호 특별기획 '학교밖 어린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에는 홈스쿨링 중인 쌍둥이 남매의 특별한 사연이 실렸다. 1999년 창간한 격월간지 '민들레'는 창간호부터 홈스쿨링을 소개한 대표적인 대안교육 전문 잡지다.

당시 만 9세였던 서울 초등학생 신모군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약한 아이를 괴롭히는 ‘복종놀이’의 대상이 됐다. 심한 학교폭력을 당한 신모군은 고위험군의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학교를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같은 학교를 다니며 오빠가 괴롭힘 당하는 과정을 지켜본 쌍둥이 동생도 함께 학교를 그만뒀다.

신모군은 '민들레'와의 인터뷰에서 “나쁜 애들이랑 어울리지 않고, 아이들이 안 괴롭히니까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공황장애로 초등학교를 그만둔 뒤 길고양이에게 먹이 주는 로봇을 만들어 2018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한 강준규(당시 만 10세)군도 유명한 홈스쿨링 사례다.

강군의 어머니 김지현씨는 지난 2019년 펴낸 책 '준규의 홈스쿨'에서 “학교에서 좀처럼 앉아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긴 시간을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서 입학할 앞둔 어린이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채웠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는 다시 밝아졌고, 행복해 했다”고 적었다.

확실적인 공교육에 대한 반발로 1993년부터 일찌감치 홈스쿨링이 합법화된 미국은 성과가 더 많이 누적돼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교육부의 연구 용역으로 수행한 2019년 ‘홈스쿨링 제도화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학년도 SAT(미국 대입자격시

험)를 치른 홈스쿨링 학생 1만1739명의 평균 성적은 전체 수험생의 상위 15%에 해당됐다. 이들의 대학 4년간 평균 학점도 공립학교 졸업생보다 높았으며, 심지어 중도탈락률도 낮았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종태 건신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등 연구진은 하버드가 매년 홈스쿨러(홈스쿨링 참여 학생) 10명을 선발하기 위한 별도의 전형을 운영하며, 홈스쿨러들의 스탠퍼드 합격률(27%)은 일반전형 합격률의 2배라고 설명했다.

홈스쿨링은 아동학대 등에 악용돼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잘 활용됐을 경우 교육적 효과도 적지 않다.

연구진은 “홈스쿨링은 기존의 학교교육과 달리 새로운 세대의 주체적인 성장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교육의 본질에 근접해 있다”며 “누가 시키거나 강요해서 억지로 배우는 일도 없고, 기를 쓰고 경쟁할 일도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홈스쿨링은 개별화 학습, 자기주도성, 인성교육 등에서 탁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교육적 가치를 가진다”고 밝혔다. 뉴시스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운천로213스카이랜드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전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를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